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11일, 김상훈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상훈의원)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 또는 관리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침해사고의 예방과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음. 향후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체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 중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하여는 강화된 정보보호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사후관리 시 현장심사 강화와 인증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제47조의8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현행 ISMS 인증제도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려는 취지로 도입·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증기준 강화에 따른 인증 취득 유인 저하 가능성과 강화된 인증기준에 의한 기업 신뢰 제고 등 기대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필요해 보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등 현재 국가사회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며 필요한 경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또는 관리대책·보호지침의 개선을 통해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증기준 차등화 기준인 ‘사회적 파급력’ 등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이와 같은 기준 설정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